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6
----------	------

발의연월일 : 2024. 8. 22.

발의자 : 정재환, 홍영진, 문기호
김도운, 문희성, 이명녀
안영호

1. 개정이유

자기계발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해 복무 제도를 개선하여 직원 복지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간 3일의 자기계발 휴가 조항 신설(안 제15조제2항제7호)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4. 8. 16. ~ 8. 21.(5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특별휴가) ① (생 략)</p> <p>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 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제15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의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 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 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u></p>

관 련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3. 작성자

- 소 속: 의회사무국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김도연
- 연락처: 290-4245